

## 부천시노동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9. 4. 2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9. 4. 3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1999. 4. 12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지역경제국장 유진생)

가. 제안이유

- 작은정부의 구현 및 지방재정력 강화와 더불어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기능 중 일부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추세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
- 우리 시에서는 노동복지회관을 민간에게 위탁하여
  -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
  -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

-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3항 규정(1999. 2. 18 조례 제1628호 제정)에 의거 노동복지회관위탁결정동의안에 대하여 부천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명칭 : 부천시 노동복지회관
- 위치 :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1번지
- 규모 : 지하 1층, 지상 3층
  - 대지 : 713평(2,359㎡) 건물 : 793평(2,621㎡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7명의 운영비가 325백만원이면 그 동안 파다 하게 지출되지 않았는지?	○ 지금까지 9명으로 운영해 왔으나 소장이 퇴임 하고 청정이 감축되어 7명이 운영하는데 수탁 할 경우 5명으로 운영하려면 자구책이 필요합니다.
○ 예산액으로 보아 건물관리에 소홀함이 없겠습니까?	○ 수탁금액은 강사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운영비 이므로 시설비 등 유지비는 지속적으로 집행됩니다.
○ 수탁회사는 거론되고 있습니까?	○ 동의 승인이 나면 모집할 계획입니다. 공식적으로 거론되는 업체는 없습니다만, 간접적인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.
○ 지원비가 90%이고 자부담이 10%인데 자부담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?	○ 전체 추정소요액의 90%는 보조하고 10%는 자부담이며 협약서에는 10%는 꼭 부담하도록 명시하겠습니다.
○ 인력조정 및 추진체계는?	○ 민간위탁시 위탁과 동시에 정원은 감축하게 되어 있어 위탁이 되면 고용승계하고 나머지 인력은 재배치하겠습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노동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요구안

의안번호	제 132 호
의결년월일	99. 4. 15 (제70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4. 2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사 유

- 작은정부 구현 및 지방재정력 강화와 더불어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기능 중 일부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추세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
- 우리 시에서는 노동복지회관을 민간에게 위탁하여
  -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
  -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
-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③항 규정(1999. 2. 18 부천시조례 제1628호 제정)에 의거 노동복지회관 위탁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부천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위탁시설의 내용

- 명칭 : 부천시 노동복지회관
- 위치 :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1번지
- 규모 : 지하 1층, 지상 3층
  - 대지 : 713평(2,359㎡)
  - 건물 : 793평(2,612㎡)

□ 위탁업무 추진체계

- 시의회 동의 → 수탁기관 선정 → 위·수탁계약 체결 → 사무, 시설운영 인계인수 → 수탁업체운영 개시

□ 위탁방법

- 수탁사업자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의(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) 선정
- 사회복지관운영지침(보건복지부시행)을 준용하고 필요한 사항은 협약체결로 함

□ 붙임 :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추진계획서 1부

##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추진계획

### I. 추진배경

- 공공부문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민간부문 영역을 과감히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간소하고 능률적인 조직운영 → 작지만 강력한 「작은정부실현」
- 신규 및 기존시설에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전문성, 경영의 효율성을 활용 → 생산원가의 절감, 비효율 부문의 효율성 제고, 민간부문의 강화

### II. 근거 및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95조(사무의 위임 등)
  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, 검사, 검정, 관리사무 등 주민의 권리,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,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6조(근로복지시설의 위탁)
 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, 기타 비영리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(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)
  -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, 검사, 검정, 관리사무 등 주민의 권리,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,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   1.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  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  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    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### III. 그간의 추진과정

- 1998. 6. 26 :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 요구(한국노총부천시지부)
  - 운영비 전액 시비지원방식 : 총 244,003천원(인건비 68,700, 운영비 51,700)
- 1998. 12. 12 : 노동복지회관위탁운영계획수립
- 1999. 1. 11 : 노동복지회관 경영진단
  - 최근 3년 평균 집행액(96.~98.) 325,041천원
  - 위탁시 : 비용 195,081천원, 인원 5명
    - 시설물 무료개방 → 현행대로
    - 무료기술, 취미교육 → 유료실비로 전환
    - 에식장 운영 → 현행대로

#### IV. 추진계획

##### 1. 현황

###### 가. 시설물

- 위치 : 오정구 오정동 611번지
- 규모 : 지하 1층, 지상 3층, 대지 : 718평(2,359.2㎡), 건평 : 793평(2,612.3㎡)
  - 지하 1층 : 구내식당, 보일러실, 전기실, 도배강의실
  - 지상 1층 : 안내실, 휴게실, 숙직실, 소회의실, 컴퓨터실
  - 지상 2층 : 사무실, 독서실, 강의실(1), 강의실(2)
  - 지상 3층 : 예식장, 예식부대시설, 귀빈실, 음향실, 조명실
- 건립연도 \_\_\_\_\_ 1991. 6월
- 건립비 : 1,859백만원(국비 311, 도비 472, 시비 1,076)

###### 나. 운영실적

###### ○ 주요사업

가) 시설물 개방 \_\_\_\_\_ 무료

- 개방시간 : 09:00~22:00
- 대상 : 독서실, 탁구장, 휴게실, 주차장, 소공원

나) 98.기술, 취미교육 \_\_\_\_\_ 무료

- 기술교육 : 6개 과정, 연 660명  
양재, 도배, 컴퓨터, 수지침, 미용, 메이크업
- 취미교육 : 2개 과정, 연 420명  
탁구, 건강체조
- 정서함양교육 : 3개 과정, 연 570명  
꽃꽂이, 서예, 사군자
- 어학교육 : 3개 과정, 연 345명  
영어, 일본어, 교양한문

다) 예식장 및 대강당 운영 \_\_\_\_\_ 유료

- 51회 3,627천원

라) 구내식당 위탁운영 \_\_\_\_\_ 유료

- 기 간 : 1998. 9. 3~1999. 9. 2
- 수입액 : 28,200천원

○ 인력 : 7명(99. 3. 16일 현재)

계	일반직	기능직	청원경찰	일용직
7명	1	3	1	2

○ 98.예산집행

계	인건비	일반운영비	시설, 자산취득비
326,711천원	152,132	149,143	25,435

2. 추진계획

가. 추진기간 : 1999. 1~1999. 5월

※ 위탁개시 → 1999. 6. 1일(예정)

나. 추진방법

○ 부서간 역할분담

- 지역경제과 : 사업자 모집, 협약의 체결(고용승계 포함), 수탁사무의 감독
- 총무과 : 인력조정 및 관리(경기도 민간위탁추진지침에 의하여 공무원정원 감축, 도정 12200-26 1999. 1. 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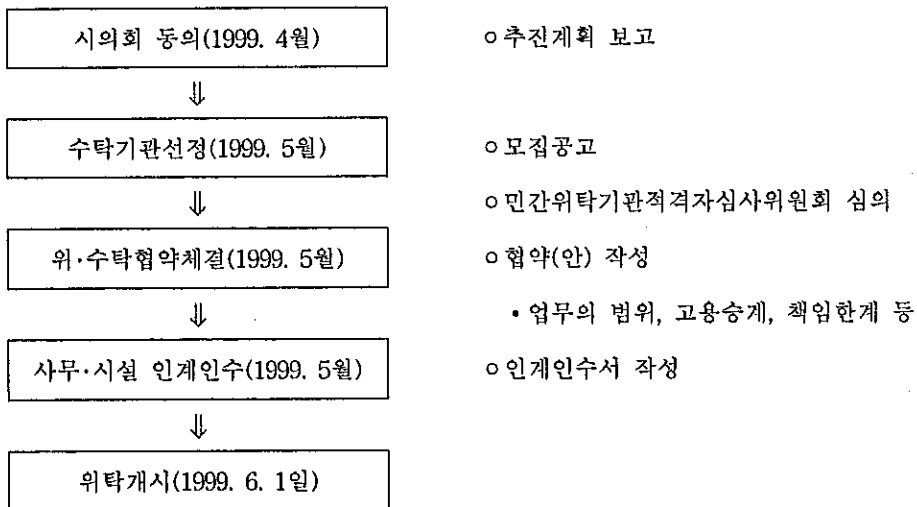
○ 수탁기관의 선정

- 부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함.

○ 위탁사업 등

- 사회복지관운영지침(보건복지부 시행)을 준용하며 필요한 사항은 협약사항으로 정함.

다. 추진일정



3. 기대효과

- 민간부분의 전문성, 기술성 이전효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

- 시설의 합리적 운영으로 시간적 비용적 손실을 제거하여 경영성 제고
- 민간위탁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(추정비용임)

구 분	시 직영시	민간위탁운영시	절감 효과
운영인력	7명	5명	△2명
운영비	325,041천원 ※ 최근 3년 간 집행액	194,400	△130,641